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23호
- 나.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9명)
- 다.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고자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
- 시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고자 함.
-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수명 연장을 기대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 안전 관리, 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나.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 사용료의 100의 50을 감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¹⁾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안전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스포츠데이 운영 현황

- 지난 7월 14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 등을 위한 스포츠데이의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스포츠데이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스포츠데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실시될지는 미지수임.
- 현재 전국에서 스포츠데이를 실시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 1곳으로, 2023년 3월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스포츠데이가 시행되고 있음.

1) 제22조의2(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 다만, 실제로 화성시에서 스포츠데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특정 날짜(매월 첫째 주 토요일)와는 무관한 상시 지원 사업에 가까워서 적절한 스포츠데이 운영 사례로서 참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 개요 >

구분	세부사업	내용
보는 DAY	스포츠 스탬프투어	화성FC 및 IBK배구 관람 시 스포츠 포인트 지급 또는 기부
배우는 DAY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 스포츠교실	직장운동부 재능기부로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및 장애인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 운영
운동하는 DAY	쓰리GO	걷기, 등산, 자전거 종목 등 구간 목표 달성 시 포인트 지급 또는 기부
	동호회 활동비 지원 사업	관내 생활체육 등록 동호회에 공통 운영물품 및 시설사용료 지원

- 특히,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개정안의 타당성

① 스포츠데이 시행을 위한 안전 조치(안 제4조의2제3항)

-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제4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스포츠데이를 실시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스포츠데이가 본격적으로 지정·운영되면 해당 기간에 시립체육시설에 인구가 밀집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②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9조 및 제10조)

- 동 개정안은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안 제9조) >

현행	개정안
제9조(입장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4. 5. (생략)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u>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5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4. 5.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안 제10조) >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u>마.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 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5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4.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u>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u> <u>나.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행사.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²⁾에 따라,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경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구체적으로는,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개인 연습·전용)를 50%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³⁾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감면 시설에서 시 연고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을 제외하는 이유는, 스포츠데이에 감액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 시민이 시설 개방을 요구하여 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장 사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개정 조문의 단서 중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 문구는 시립체육시설이 프로구단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11-12p 표 참조)
- 다음으로, 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입 감소 추계치를 살펴보면, 서울시 연고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을 제외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연 12일⁴⁾·50% 감액할 경우, 연간 3천3백만원 (△1.6%)의 세입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별 세부 추계 내역(시의회 재정분석관) >

시설명	구분	2024년 연간 수입액(A)	1일 평균 수입액(B)	감면비율(C)	연간 스포츠데이(D)	연평균 수입감소액
총 합		1,996,178	5,469	50%	12일	32,814
잠실종합운동장	소계	591,117	1,619	50%	12일	9,717
	입장료	0	0			0
	사용료	개인연습	348,693			5,732
		전용	242,424			3,985

3) 잠실야구장, 잠실실내체육관, 서남권돔구장 내 야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주경기장, 목동운동장 내 주경기장, 장충체육관 내 주체육관

4) 화성시와 동일하게 스포츠데이가 월 1회(연 12회) 실시될 경우를 가정함.

목동 운동장	소계		256,910	704	50%	12일	4,223
	입장료		3,725	10			61
	사용료	개인연습	10,108	28			166
		전용	243,077	666			3,996
서울 월드컵 경기장	소계		577,863	1,583	50%	12일	9,499
	입장료		24,050	66			395
	사용료	개인연습	0	0			0
		전용	553,813	1,517			9,104
고척 스카이돔	소계		412,734	1,131	50%	12일	6,785
	입장료		0	0			0
	사용료	개인연습	126,166	346			2,074
		전용	286,568	785			4,711
장충 체육관	소계		157,554	432	50%	12일	2,590
	입장료		16,567	45			272
	사용료	개인연습	8,833	24			145
		전용	132,154	362			2,172

※ 연평균 수입감소액 = $\{(A \div 365) \times C\} \times D$

※ 효창운동장 및 구의·신월야구공원은 잠실 및 목동에 포함하여 추정

○ 따라서 동 개정안의 시행이 서울시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체육활동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아직 스포츠데이의 실시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서울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추계치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도 있음.

○ 감면율 규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100분의 50이라는 감면율은 사회적 공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현행 조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비율 >

구분	감면율	조건
입장료	면제	1.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 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6.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0분의 50	1. 18세 이하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00분의 30	1.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
개인사용료 (연습 사용료)	면제	1.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1.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구분	감면율	조건
개인사용료 (연습 사용료)	100분의 30	1.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수영장, 테니스장 제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전용사용료	면제	1. 시가 주최하는 경기·행사 2.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 4.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	1.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
	100분의 30	1.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2.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5.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6.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7.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 또한, 향후 서울시의 스포츠데이 운영 방침에 따라 소요 비용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수정 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9조(입장료) ①·② (생략)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 ----- -----.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신설>	3. <u>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5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3. <u>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4. 5.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 ----- ----- -----.	1.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신설>	마. <u>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5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마. <u>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바. (생략) 2. 3. (생략) 4.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4. <u>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u> 가. <u>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u> 나. <u>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행사.</u> <u>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u> 5.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설></u>	바. (개정안과 같음) 2. 3. (개정안과 같음) 4. <u>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u> 5. ----- -----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u>사.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행사.</u> <u>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u> <u>아. (개정안 사목과 같음)</u>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 한편, 개정안은 부칙 안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부칙 안 제2조는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에만 스포츠데이 감면 규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목동실내빙상장의 2025년의 예상 수입이 반영된 위탁비정산이 이미 완료되어 개정 규정을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홍민지(2180-8118)
------	----------------	-------	----------------

의안번호
302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길영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 8.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고자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시장이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 안전관리, 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의2) ○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100의 50을 감액함(안 제9조·제10조)		
추진경과	○ 2025. 8. 11. 조례안 발의(발의자 : 김길영 의원) - (찬성자) 김규남, 김동욱,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이효원, 허훈 의원 등 19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율 증가와 이를 통한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조례개정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스포츠데이 할인은 이용자 전체가 대상이므로, 차상위계층·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책적 감면대상의 할인을(30~50%)을 고려, 조정 필요(50%→30%) ※ 개정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및 제4호나목 - 또한 의미 명확화를 위해 ‘프로구단(연고구단)의 경기장’은 ‘프로구단(연고구단)이 사용하는 경기장’으로 수정 필요 ※ 개정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및 제4호나목 ○ 참고로, 본 개정사항은 조례 [별표1] 에 규정된 시설에만 적용되며, 한강·공원 등 별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미적용됨.		
대응방안	○ 감면율 수정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의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장중석(☎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